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길영 의원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613 |
|----------|-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2월 05일
발 의 자: 김길영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경훈, 김규남, 김동욱,
김혜지, 박상혁, 서상열,
송경택, 옥재은, 이상욱,
이효원, 장태용, 정지웅,
허 훈, 황철규 의원(14
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내 공공 체육시설 유지 보수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, 운영 주체인 서울시의 세수를 확대하는 한편, 기업에게는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시 체육시설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명명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(안 제15조의2)

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명칭사용권) ① 시장은 기업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체육 시설의 명칭에 기업의 명칭이나 브랜드 등을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|
| <u><신 설></u> | <p><u>제15조의2(명칭사용권) ① 시장은 기업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체육 시설의 명칭에 기업의 명칭이나 브랜드 등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</u></p> |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조의2(명칭사용권)을 신설하여 명칭사용권 판매에 따른 재정수입이 증가하는 안으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 - 다만, 체육시설 명칭변경 시 안내판 변경 등에 따른 일부 비용소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와 유사한 지하철 역명부기 유상판매 사업을 시행 중인 서울교통공사에 문의하였음
 - 문의결과 안내판 변경비용은 명칭사용 낙찰기업 또는 기관에서 부담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의 비용부담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, 체육시설 명칭사용권 판매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| | |
|--------|---------|
| 시의회사무처 | 재정분석담당관 |
| 담 당 관 | 오희선 |
| 추계세제팀장 | 이정수 |
| 추계분석관 | 손제승 |

☎ 02-2180-7954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